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06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1)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함(제19조의2 제1항)
- 2) 이 법 시행 이후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즉시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교체한 무인정보단말

기의 경우 2027년 10월 23일부터 적용함(제19조의2 제2항)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경우

- 1) 스마트폰 및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제19조의2 제3항)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등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제19조의2 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025년 10월 23일 이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2. 2025년 10월 22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7년 10월 23일

③ 법 제26조의2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이란 스마트폰 또는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 충족
2.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
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부 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025년 10월 23일 이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2. 2025년 10월 22일 이전에 설

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7년 10월 23일

③ 법 제26조의2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이란 스마트폰 또는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 충족 2.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자·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56